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8. 28.(금) 10:00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24,142,373천원(일반 709,767,406천원 특별 14,374,967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안)	비 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회추경		
계		724,142	698,776	527,952	143,761	27,063	25,366	
일 반 회 계		709,767	685,798	515,105	143,697	26,996	23,969	
특 별 회 계		14,375	12,978	12,847	64	67	1,397	
	의료급여기금	495	449	448	1	-	46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890	461	461	-	-	429	
	주 차 장	12,990	12,068	11,938	63	67	922	

4.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경	제 환 경 국	93,108,536	91,196,975	1,911,561	2.10
	지 역 경 제 과	42,092,525	39,725,837	2,366,688	5.96
	일 자 리 창 출 과	13,014,245	13,799,205	△784,960	△5.69
	도 시 재 생 과	4,668,933	4,659,493	9,440	0.20
	청 소 행 정 과	31,416,212	31,051,202	365,010	1.18
	환 경 과	1,916,621	1,961,238	△44,617	△2.27

5. 경제환경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세 부 사업명	사 업 개 요	최종예산 (A+B)	기정액 (A)	2차추경(안) (B)
1	지 경 제 과	신규 골목경제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형 골목경제 지원센터 운영 · 지원규모 : 약 2,600건 - 사무관리비 23,200천원, 업무추진비 1,000천원 	24,200	0	24,200
2	지 경 제 과	남문시장 고객편의 시설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고객편의시설 증축을 통한 상인교육장, 회의장 등 다목적 활용 공간 확보 - 2층은 100.8㎡로 수평증축, 3층은 동일면적으로 수직증축 ⇒ 공사 효율성 제고 및 내구성 측면에서 신축 검토 	0	526,000	-526,000
3	지 경 제 과	신규 남문시장 고객편의 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 · 규 모 : 지상3층(326㎡) - 1층 : 공중화장실, 고객휴게실, 평면주차장(10면) - 2층 : 상인회 사무실 - 3층 : 다목적실(상인교육장, 동아리활동방 등) · 총사업비 : 1,490백만원(금회반영) 	37,000	0	37,000
4	지 경 제 과	신규 전통시장 비대면 배송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대명시장 비대면 배송사업의 물류비, 홍보비 지원 ※ 남문시장(사비 기편성) 	13,000	0	13,000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최종예산(A+B)	기정액(A)	2차추경(안)(B)
5	지역 경제과	신규 대명 여울빛 거리시장 경관조명 개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대명 여울빛거리시장 노후 조명시설을 LED경관조명으로 교체 ◦ 위치 : 시흥대로52길(대명여울빛거리) ◦ 규모 - LED 조명 20개소 개량 - 배관배선 등 전기공사 1식 - 선로굴착418m 	40,000	0	40,000
6	지역 경제과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일부지원(기업당 최고 3백만원) ◦ 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11개사(국내8개사, 국외 3개사) ⇒ 코로나19로 국내외 전시회 일부 취소 	11,340	21,840	-10,500
7	지역 경제과	G-밸리 패션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내용 : 봉제업체 대상 교육, 촬영스튜디오 대관, 지역패션페스티벌 개최 등 ◦ 시설현황 - 위치 : 디지털로10길 9(현대시티아울렛 5층) - 규모 : 전용면적 569.15㎡ - 공간구성 : 쇼룸, 스튜디오, 회의실, 교육실 ⇒ 무상 임대차계약 연장으로 시설 철거 및 복구 비용 미집행 	107,000	157,000	-50,000
8	지역 경제과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내용 : 기업인 회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동아리활동장소, 우수제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공간 등으로 활용 ◦ 시설현황 - 위치 : 디지털로10길 9 (현대시티아울렛 6층) - 규모 : 전용면적 549.38㎡ - 공간구성 : 대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 ⇒ 무상 임대차계약 연장으로 시설 철거 및 복구 비용 미집행 	200,000	250,000	-50,000
9	지역 경제과	해외 우호 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관내 기업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 중국시장 관련 컨설팅 제공 및 중국 시장 진출 직접 지원 ⇒ 코로나19로 해외교류사업 중단 	120,011	163,300	-43,289
10	지역 경제과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국내 자매도시 청소년 간 초청·방문을 통한 도농체험활동 및 교류 ⇒ 코로나19로 자매도시 교류 중단 	0	18,500	-18,500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최종예산(A+B)	기정액(A)	2차추경(안)(B)
11	지역경제과	신규 중소기업 서울사랑 고용행복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 ◦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40만원 (SBA 30만원 + 자치구10만원) ◦ 지원인원 : 300명 ◦ 주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30,000	0	30,000
12	일자리창출과	금천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구)라온어린이집 관리비 ⇒ 일자리주식회사 출범전 사무실 관리비 	301,000	298,600	2,400
13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구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제공 ⇒ 코로나19로 일자리위원회 개최 축소 	5,400	7,380	-1,980
14	일자리창출과	지식산업 센터와 함께하는 19데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업체등의 수요에 맞춰 찾아가는 소규모 채용면접의 장을 마련 ⇒ 특성화고 학생 대상 소규모 취업박람회 미개최 	9,500	15,000	-5,500
15	청소과	폐기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관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처리 증가(2,000톤) 및 봉제원단 재활용 처리업체 사업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비용 편성 	1,339,800	880,000	459,800
16	청소과	생활 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쓰레기 감량 분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완료로 보조금 잔액 감추경 ⇒ 공모사업 완료로 집행잔액 감액 	20,158	30,000	-9,842
17	청소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워크숍 ⇒ 코로나19로 워크숍 미개최 	0	4,000	-4,000
18	청소과	신규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노후 청소차량 교체(진개덤프 2.5톤) ⇒ 2009년식 	49,000	0	49,000
19	청소과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천연가스 청소차와 소형청소차 구매비 ⇒ 국시비 보조금 교부로 구비 일부 감액 	193,000	335,000	-142,000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최종예산(A+B)	기정액(A)	2차추경(안)(B)
20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감액 ⇒ 경유차량 감소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수 감소 	29,394	32,394	-3,000
21	환경과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맞춤형 환경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중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 민·관 협치를 통한 미세먼지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실천운동 전개 ⇒ 코로나19로 초중고 개학연기 및 대면교육 불가 	7,110	48,400	-41,290
22	환경과	신규 수질관련 배출시설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2019년 정부합동평가(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율) 우수기관 선정 성과지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 적발 건수 비율이 높을수록 우수성과로 평가 	1,000	0	1,000
23	환경과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비법정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계약 비용 절감 	28,574	34,056	-5,482

6. 검토의견

가. 추경예산안

○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911억 9,697만원)에서 금회 19억 1,156만원이 증액된 총 931억 853만 6천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3.12%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지역경제과는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신규 사업에 1억 4,420만원 증액 편성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등 6개 사업 6억 9,828만 9천원을 감액

-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사업 개발 지원 등 2개 사업 748만원을 감액

-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처리 4억 5,980만원, 청소차량 구매 관리 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 환경과는 금천에코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4,977만 2천원 감액함.

- 경제환경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골목 경제 활성화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의 활로 개척에 집중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경예산 집행으로 당면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